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(안)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0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와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,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개요
- 나. 세입·세출의 결산
- 다. 재무제표
- 라. 성과보고서
- 마. 결산서 첨부서류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, 제150조(결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(결산 승인)

○ 관련서류 : 2021회계연도 결산서(안) 및 결산검사 의견서

5. 검토의견

가. 보건소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

1) 세입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계	14,684,550,000	15,586,923,620	15,577,460,950	99.96%
보건정책과	3,820,974,000	4,275,251,480	4,275,251,480	100%
건강증진과	10,445,508,000	10,866,873,880	10,861,165,680	99.9%
위생과	418,068,000	444,798,260	441,043,790	100%

-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46억 8,455만원이며, 징수 결정액은 155억 8,692만원, 세입결산액은 155억 7,746만원으로 징수율은 99.9%임.

2) 세출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보조금 반납금	집행잔액	
					금액	비율(%)
계	24,271,680,060	19,730,404,375	2,420,597,470	1,257,740,732	862,937,483	3.6%
보건정책과	5,577,808,000	4,317,413,435	987,550,000	37,297,592	235,546,973	4.2%
건강증진과	17,917,780,060	14,660,882,560	1,433,047,470	1,218,793,140	605,056,890	3.4%
위생과	776,092,000	752,108,380	0	1,650,000	22,333,620	2.9%

○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242억 7,168만원이며, 지출액은 197억 3,040만 4천원,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2,059만 7천원,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5,774만원, 집행잔액은 8억 6,293만 7천원임.

○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3.6%로 2020회계연도의 3.7%보다 0.1% 감소하였음.

가) 다음연도 이월사업

○ 명시이월사업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원인 행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계		5,111,240	2,688,610	2,688,610	2,312,154	
보건 정책과	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 5건	1,385,594	387,772	387,772	987,550	심사보조자료 263p참고
건강 증진과	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외 5건	3,725,646	2,300,838	2,300,838	1,324,604	심사보조자료 281p참고

-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2개 부서에 12건 23억 1,215만 4천원으로, 보건정책과 6건 9억 8,755만원, 건강증진과 6건 13억 2,460만 4천원임.

○ 사고이월사업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예산현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 월 액	이월사유
계		257,350	206,109	97,666	108,444	
건 강 증진과	감염병 방역활동 외 1건	257,350	206,109	97,666	108,444	심사보조자료 281p참고

-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1개 부서에 2건 1억 844만 4천원으로서, 건강증진과 1건임.

나) 예산전용현황

(단위 : 천원)

부 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액		사유
				감액	증액	
보건소 (4건)			1,343,378	14,694	14,694	
건 강 증진과	모자건강센터 운영	301-12 기타보상금	14,000	5,000	0	비대면 출산준비교실 운영 에 따른 영상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
	모자건강센터 운영	201-01 사무관리비	10,700	0	5,000	
	기본경비	202-01 국내여비	62,160	3,717	0	2021년 공무원 임금협약 내 코로나19 대응 수당 신설로 공무원 간호사 대 상 수당 소급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
	우리아이 간호사 인력운영비	101-03 무기계약근로 자보수	213,401	0	3,717	
	기본경비	202-01 국내여비	54,461	1,995	0	
	통합건강검진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	101-03 무기계약근로 자보수	418,605	0	1,995	

부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예산액	전용액		사유
				감액	증액	
	기본경비	202-01 국내여비	58,443	3,982	0	2021년 공무원 임금협약 내 코로나19 대응 수당 신설로 공무원 간호사 대 상 수당 소급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
	서울형 어르신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	101-03 무기계약근로 자보수	511,608	0	3,982	

-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1개 부서 건강증진과 4건 1,469만 4천원임

다) 집행잔액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현액 (A)	집행잔액 (B)	비율 (B/A)	사유별				
				보조금 정산잔액	낙찰 차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	지출 잔액	예비비
계	24,271,680	862,937	3.5%	311,298	0	4,113	547,526	0
보건정책과	5,577,808	235,547	4.2%	24,143	0	0	211,404	0
건강증진과	17,917,780	605,057	3.3%	287,142	0	240	317,675	0
위생과	776,092	22,333	2.8%	13	0	3,873	18,447	0

- 2021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8억 6,293만 7천원이며,
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.5%임.

- 집행잔액 사유는, 보조금 정산잔액 3억 1,129만 8천원, 계획변경
등 집행사유 미발생 411만 3천원, 지출잔액 5억 4,752만원 6천원임.

라) 기금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부서명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	943,263	△14,126	73,061	87,187	929,137
식품진흥기금	위 생 과	943,263	△14,126	73,061	87,187	929,137

- 2021회계연도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7,306만 1천원이며 사용액은 8,718만 7천원으로 최종 2021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억 2,913만 7천원임.

마) 예비비 결산현황

(801-01 일반예비비)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	
합 계				222,049	222,049	0	0	
건강 증진과	가족건강 및 출산 장려지원	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운영	기 간 제 근로자등 보 수	222,049	222,049	0	0	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

(801-02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)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	
합 계				591,534	288,445	246,097	56,992	
보 건 정 책 과	보건의료 서 비 스 원 지	보건의료 서 비 스 공 제	사 관 리 무 비	17,930	17,571	0	359	코로나19 실시간 검사 대기 현황 안내 시스템 구축
건 강 증 진 과	감 염 병 관리체계 구축운영	감 염 병 방역활동	사 관 리 무 비	250,000	96,474	106,993	46,533	코로나19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 및 민간업체 활용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	
감염병관리체계구축운영	신감염예방대책	중병및응급대응	기간제근로자등수보	139,104	0	139,104	0	코로나19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 및 민간업체 활용
	신감염예방대책	중병및응급대응	신감염예방대책	75,000	68,353	0	6,647	코로나19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 및 민간업체 활용
위생과	식품위생관리	식품접객업소안전관리	사무관리비	100,000	96,549	0	3,451	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대책 관련 취약계층 방역 물품 지원
	공중위생관리	공중위생업소안전관리 및 평가강화	사무관리비	9,500	9,498	0	2	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대책 관련 취약계층 방역 물품 지원

- 202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2억 2,204만원 9천원이며 지출잔액은 없음
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지출액은 2억 8,844만원 5천원, 이월액은 2억 4,609만 7천원이며 지출잔액은 5,699만원 2천원임.

바. 검토의견

-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3.5%임.
이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,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여짐.
-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,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불용율이 높게 나타난 바,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붙임 관련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제82조(결산 승인)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.

지방회계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타법개정]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. <신설 2020. 6. 9.>

1.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2.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

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 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